

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·설비 기준(제22조제3항 관련)

구분	시설·설비 기준
1. 학습시설	가.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인 수업실 1실 이상 1) 동시 학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: 15제곱미터 2) 동시 학습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: 동시 학습자 수 $\times$ 1.5 제곱미터 나. 학습에 필요한 시설·설비
2. 교원연구실	1실 이상. 다만, 해당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교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연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.